

2018 WATER KOREA 외부기관 세미나 개최 지원 협약서

한국상하수도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와 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WATER KOREA(국제물산업전시회) 연계행사로서 개최되는 세미나/협의회/회의 등(이하 "행사"라 한다)에 대하여 개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서는 협의회가 개최하는 행사를 WATER KOREA 기간 중 동시에 개최함에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) ① 협회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위해 회의실 또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다.

1. 회의실 및 부대시설(빔프로젝트 등)
2. 지원금 8,000,000원

② "협회"가 "협의회"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정액으로 하며 회의실은 상호 협의하에 실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한다.

③ "협의회"는 "협회"의 지원에 대하여 WATER KOREA 행사의 취지와 부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이외 용도로 사용 시 협회는 사용내역 만큼 환수조치 할 수 있다.

제5조(업무협의) ① "협의회"은(는) 이 행사와 관련하여 "협회"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.

② "협회"는 필요한 경우 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"협의회"의 사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손해배상 등) "협의회"은(는)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"협의회"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협약의 해지 등) ① "협회"와 "협의회"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에서 탈퇴코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그 사유를 문서로써 상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"협의회"이(가) WATER KOREA 개최 전 행사를 취소 할 경우 "협회"가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다.

③ "협의회"의 사업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 해당시 "협회"는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"협의회"이(가)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
2. "협의회"이(가)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
④ "협회"는 3항의 사유로 협약 해지를 요구한 때에는 "협의회"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8조(신의 성실의 원칙) ① "협회"와 "협의회"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,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"협의회"은(는) 이 협약에 의한 행사 준비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제반 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차질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사전협의) "협의회"의 행사 추진 중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그 사항에 대하여 "협회"에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결과보고) "협의회"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포함한 소정의 결과보고서를 행사종료 후 14일 이내에 "협회"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기타사항)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"협회"와 "협의회"이(가) 상호협의하여 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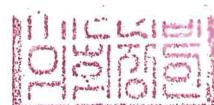
제11조(협약의 효력 등)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"협회"와 "협의회"이(가) 상호 날인한 날부터 "협의회"의 결과보고가 이루어진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.

② "협회"와 "협의회"이(가) 각각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날인된 협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13조(해석의 결정) 본 협약의 해석상 또는 협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본 협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"협회", "협의회"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"협회"의 해석에 따른다.



2018. 3. 7.



한국상하수도협회

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244

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-10

한국상하수도협회장

권영진



(인) 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회장

정득모

